천연가스설비 솔루션 협의체 운영지침

제 정 2020.05.27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천연가스설비 기술지원과 노하우 공유 및 전수를 위해 구성한 천연가스설비 솔루션 협의체(이하 "협의체" 라 한다)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협의체 운영 및 소속된 솔루션 전문위원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- 1. 협의체 : 천연가스설비 기술지원과 노하우 공유 및 전수를 위한 조직
- 2. 위원 : 협의체에 선발된 직원으로 천연가스설비 고장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술노하우의 공유 및 전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조직) ① 협의체 조직 및 구성원은 별표1과 같으며 수행업무는 각호와 같다.

- 1. 협의체 위원장 : 협의체 총괄
- 2. 협의체 반장 : 분야별 협의체 조정 및 관리
- 3. 협의체 반원 : 협의체 위원 관리 및 지원
- 4. 위원 : 천연가스설비 솔루션 제공, 기술 노하우 공유 및 전수
- ② 설비별 리더는 해당 설비별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.
- ③ 협의체 조직 및 구성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.

제5조(선발기준) 위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4급 이상 기술직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설비 정비경력이 5년 이상인 자
- 2. 해당 설비에 대한 업무 지식이 탁월하고 리더쉽이 우수한 자
- 3. 위원으로 활동할 의욕이 확고하고 학구적이며 창의력과 연구심이 왕성한 자
- 4.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

- 제6조(선발기준 적용의 예외) 협의체 운영의 목적 달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1호 선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.
- 제7조(선발방법) 위원은 분야 및 설비별로 별표2 '솔루션 위원 추천서' 양식에 의거 지사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원의 3~5배수를 선정하고, 제5조 및 제6조의 선발기준과 지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.

제8조(위원해임)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위원 활동이 저조하여 협의체의 구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, 해당 협의체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위원장이 결재한 경우
- 2.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경우
- 3. 협의체 운영 분야 및 설비가 변경된 경우
- 4. 위원 본인의 요청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- 5.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- 제9조(인사이동) ① 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위원활동 기간 중 인사발령을 최소화 한다. 단,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인사발령을 원하는 경우 전보기준에 의거 발령하되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.
 - ② 회사의 방침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.

제10조(위원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.

제 3 장 활 동

- 제11조(활동방법) ① 위원은 평상시 해당 지사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, 솔루션 요청 시다음과 같은 솔루션 활동을 수행한다.
 - 1. 솔루션 요청에 대한 자문 시 해당 설비 리더 및 위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.
 - 2. 긴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위원이 우선 솔루션을 제시하고, 추후 위원 간 상호 교 류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하다.
 - 3. 위원은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통해 기술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 - 4. 솔루션 제시자료는 솔루션 게시판에 등록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유를 해야 한다.
 - 5. 솔루션을 제시받은 위원은 솔루션 요청 및 솔루션내용을 별표 3 '솔루션 기록지'에 기록하여 게시판에 등록하고, 협의체 반원은 매 분기별 별표 4 '솔루션 기록관리대장'에 기록하고

관리해야 한다.

- ② 위원은 주기적인 협의체 교류회 등에 참여하여 기술노하우를 공유 및 전수 하며, 소통을 통해 협의체의 지속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.
- 제12조(평가방법) 제11조 1항 5호에 의해 게시판에 등록된 '솔루션 기록지'는 분기별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.
- 제13조(솔루션위원회) ① 제12조에 의거 '솔루션 기록지'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본사에 솔루션 위원회를 둔다.
 - ②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기술처장이 되고, 평가위원은 별표7에 의해 정비기술처 각 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협의체 반원이 담당한다.
 - ③ 솔루션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심의사안은 다음과 같다.
 - 1. '솔루션 기록지'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활동비 지급 결정(별표5, 별표6)
 - 2. 우수한 활동을 한 위원에 대한 특별포상 추천
 - 3. 기타 솔루션 활동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
- 제14조(솔루션 실적관리) 협의체 반원은 매년 12월 당해연도 솔루션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다.

제 4 장 보상 및 지원

- 제15조(솔루션 활동비 지급) 위원에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 솔루션 활동비를 지급한다.
- 제16조(자기계발 및 교육훈련) ① 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, 기술 및 경험을 연마할 의무가 있다.
 - ② 위원장은 국내외 전문분야 교육계획 수립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육의 우선권을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.
- 제17조(전문기관 등과의 교류) ① 위원은 천연가스설비 관련 제작사의 신설비, 신기술 분야 세미나 교육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.
 - ② 위원의 신기술 습득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전문기관(연구소, 학회, 대학, 협회 등)과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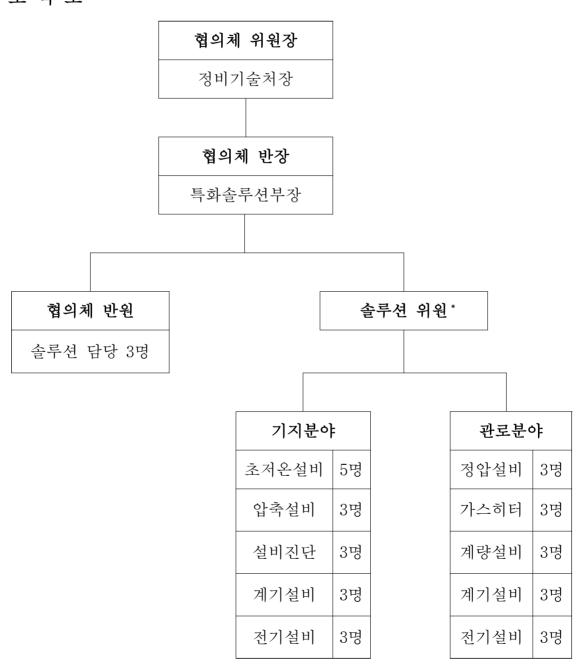
부 칙

① 이 지침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협의체 조직 및 구성원

□ 조 직 도



- ※ 위원 총인원은 32명, 리더는 설비별 1명 선정
- ※ 분야별 설비 및 인원은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

【별표2】

솔루션 위원 추천서

분야 및 설	/		
소 속		직 급	
성 명		현 근무지	
생 년 월 일		입사 년 월일	

	보유자격 취득사항					
구 분	자 격 명	취 득 일 자	비고			
Pro-Way						
국 가 자 격						
해 당 설 비 경 력 사 항	- - -					
추 천 의 견						

20 . . .

추 천 자 : ○○○○ 지사장 (인)

솔루션 기록지

□ 관리번호: (기지/관로_설비분야_00(년도)-01)

요 청 일	년 월	일
요 청 자	지사 부	파트 00 000
설 비 명		설비번호
규 격		제 작 사
설 치 일		기타사항

□ 요청내용 		

□ 솔루션 내용

20 년 월 일

00설비 솔루션 위원 (인)

00설비 솔루션 위원 (인)

【별표4】

솔루션 기록관리 대장

No	요청일	제시일	요청	자	요청내용	솔루션 내용	비고
NO	교생된	세기 현	소속	성명	<u>क्र % ता ठ</u>	<u></u>	비포

【별표5】

솔루션 평가기준

□ 관리번호 :

평가구분	평가기준	배점	평가점수
	① 전사(기지&관로) 적용가능	35	
1. 파급성	② 기지 또는 관로 해당분야만 적용	30	
1. 当日後	③ 해당지사 설비에만 적용가능	25	
	④ 단발성 효과에 그침	20	
	① 기술제시 수준이 대단히 우수	30	
2. 기술	② 기술제시 수준이 대체적으로 우수	25	
제시수준	③ 기술제시 수준이 보통	20	
	④ 기술제시 수준이 미흡	10	
	① 기록지 작성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단히 우수	20	
3. 기록지	② 기록지 작성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수	15	
작성 노력도	③ 기록지 작성 내용이 보통	10	
	④ 기록지 작성 내용이 미흡	5	
	① 만족	15	
4. 만족도	② 보통	10	
	③ 미출	5	
	합 계	100	

20년월일솔루션 평가위원(인)

【별표6】

솔루션 활동비 지급기준

- 1. 지급대상 : 솔루션 위원으로 '솔루션 기록지'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등록한 자
- 2. 지급기준
 - 솔루션 평가기준에 의해 차등지급 (60점 미만 시 미지급)
 - 게시판에 등록된 '솔루션 기록지'에 등록된 건수로 평가하여 분기별 지급
 - '솔루션 기록지'에 2인 이상 등록한 경우, 모두에게 평가기준에 의한 동일금액 지급
 - 솔루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결정 한다.
- 3. 지 급 액

구 분	90점 이상	75점 이상 90점 미만	60점 이상 75점 미만	60점 미만
지급액 (건당)	50,000원	30,000원	20,000원	미지급

【별표7】

솔루션 평가위원

구 분		인원	비고
위원장	정비기술처장	1명	
평가위원	정비기획부 기지기술부 관로기술부 특화솔루션부	각 1명	
	계	5명	

※ 간사 : 협의체 반원 1명